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3. 17.(목)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2년 3월 8일

○ 회부일자: 2022년 3월 10일

3. 제안이유

○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1. 1. 5.)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제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21. 4. 20.)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충청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및 환경교육 기본 계획과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환경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현행)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 (개정)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기후위기”,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용어정의 추가(안 제2조)
- 학교장의 책무 사항 추가(안 제3조)
-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 위원 구성을 15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6조)
-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현행 시범학교 지정·운영 사항을 환경교육 연구학교 및 초록학교 지정·운영으로 변경(안 제8조)
- 환경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교육 관련 사항들을 반영한 조문 정비와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기후위기”,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4조의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2016 파리기후변화 협정’,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 ‘탄소중립 법제화’ 확대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세워(2020. 12. 7)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 안 제3조에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학교장의 책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환경 관련 학생 체험활동과 교원 연수 및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시행과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8조에서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연구학교 및 초록학교 지정·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맞게 용어를 수정·보완하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고, 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